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8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 제6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

다. 회 부 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 사회적 책임 장려(§6)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 사회적 책임 장려(§6)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및 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달청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등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조달절차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녹색기업, 고용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현행 조달절차에서의 사회적·환경적 가치 반영 사례(예시)]

구분	내용	근거지침
환경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최소녹색기준 반영, 기준 충족시 조달시장 진입 허용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청 공고)
	<신인도 가점> -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업 - 우수재활용(GP), 저탄소제품인증, 환경표지 인증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
고용	<우수제품 지정 연장> - 신규·청년 고용,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신인도 가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고용안정 우수기업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중소 · 약자 기업 지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배점> - 중증장애인생상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노동	<신인도 가·감점> - 사고사망만인율(가·감점) - 산재예방활동실적(가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감점)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감점) - 임금체불(감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훈령)
	<건설안전 심사> - 사고사망만인율(가·감점) - 산재예방활동실적(가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감점) -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감점) - 산업안전보건법 상습위반(감점)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훈령)
공정 거래	<신인도 가·감점> - 상호협력평가등급(가점) - 불공정하도급거래(감점) - 하도급상습위반(감점) - 하도급상습위반(감점) - 동반성장지수(가점)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가점) -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가·감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지침)
기타	<신인도 가점> - 저출생 대응지원(가족친화인증 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등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자료 :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조달절차에서 반영하여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²⁾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행 제6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인권 등의 가치들은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예시한 것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장애인 접근권을 조달절차에서 반영하여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일종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달청 및 수요기관 등이 조달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1)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따라 조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 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 동, 고용, 공정거래, <u>소비자 보호</u>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 ----- ----- ----- <u>소</u> <u>비자 보호 및 장애인 접근권 보장</u> -- ----- -----.

문의처

02)6788-5160